

# 관세업무리스크 인식과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f customs business risk recognition and insurance accident occurrence

정성훈(Sung-Hun Jung)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김태인(Tae-In Kim)

엘리트관세사법인 대표, 경영학 박사

##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Abstract
IV. 연구결과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relation with risk recognition degree by customs business of customs brokers and actuality insurance accident occurrence.

These study finding that risk recognition by customs work area of customs brokers and actuality insurance accident occur did not agree.

So customs brokers more elevate risk recognition of entry field, origin/trademark right, HS and customs tariff application, customs refund, price estimation that are high the insurance accident rate. and they may have to do emphasis administration through employee education and ability elevation.

Specially, operation risk that is produced from charge employee's simplicity mistake who tax invoice omission, a tax use mistake, document nondelivery, notice dispatch delayed action, may have to manage through moral management and employee bylaws and education, employee guidance etc.

Also, they publicize these contents to import and export enterprise, and practice risk management of high risk business in priority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so we will have to make can do more effective risk management.

Key Words : customs business, risk recognition, risk measurement, insurance accident

## I. 서론

수출입기업이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신용리스크와 상업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법적리스크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꾸준한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악화와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WTO 원산지협정 및 WCO 교도협약의 영향에 따른 관세행정의 전반적인 개편(신고납부제 도입) 등 외부 환경변화와 동종업계의 과당경쟁 및 외국기업의 경쟁적 진입, 인사변동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 숙련자의 업무수행, 국가간의 상이한 관세법 절차,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 내부 환경변화로 관세업무와 관련된 운영리스크와 법적리스크는 점점 증가되어 왔다.<sup>1)</sup>

운영리스크와 법적리스크의 경우는 그 빈도와 심도의 측정과 평가가 어려워 현재까지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보험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통적 재무기법의 활용을 기초로 하여, 내부적으로 직원교육이나 전자적 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 등 리스크통제수단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 151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결과, 리스크재무(보험, 보유)보다 리스크통제(손실통제, 외부전문가) 방법이 리스크관리성과와 기업성과에 더 효과적임을 밝혀내었다.(김태인 2006)

수출입기업이 외부전문가인 관세사에게 관세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업들은 리스크통제 및 비용감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관세사의 경우는 수출입기업들의 관세업무리스크를 대신 떠안게 됨으로써 배상책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들 역시 운영리스크 및 법적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내부조직 관리를 통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정성훈, 김태인 2006)

본 연구에서는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별 리스크인식 정도와 실제 보험사고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관세사들이 집중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를 실제로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관세사들의 업무분야별 리스크 인식도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즉, 리스크 인식정도가 높은 관세업무에서 실제로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 후, 관세사 교육 및 관세사 사무원 교육, 관세사회의 홍보 등을 통해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업무를 중점관리 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1) 관세청의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서 2000년 조사감시정보시스템 도입 후 사후심사 강화에 따른 관세청의 부족세액 추가정수는 2000년 439억원, 2001년 942억원, 2002년 1,732억원, 2003년 1,372억원, 2004년 4,916억원, 2005년 2,069억원으로 점점 증가추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리스크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리스크관리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업특성과 관리성과, 인식과 관리성과, 관리기법과 관리성과, 리스크관리와 기업성과로 나누어진다.

기업특성과 관련하여 James(1990), Schmit and Roth(1990), Herbig and Golden(1994)은 기업의 규모와 국제화 경험은 리스크 관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호(1994)은 규모와 경험의 기업특성, 직접 수출과 간접수출의 거래특성과 리스크 인식도와 관리수단의 관리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용리스크 비용으로 측정된 관리성과를 매개변수로 하고 이익률 및 성장률을 수출성과로 하여 종속변수로 취급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제현(2001)은 수출보험제도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보험활용률을 매개 변수로 하여 수출성장률을 수출성과로 나타내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여 수출보험활용률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는 수출규모와 수출경험, 리스크 인식, 리스크 통제기법 활용, 수출보험활용이 리스크 관련 비용을 감소시켜 관리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됨을 입증하였다.

리스크 인식과 관련하여 이경룡(1990)은 한국기업의 리스크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여 리스크 인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표 2-1〉 리스크 관리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학 자	연도	기업특성 변수	관리 변수	성과 변수	분석
Alan M. Rugman	1976		리스크관리	수출성과	실증
Sprecher, Pertl	1983		관리기법	기업가치(주가변동)	사건
조동세	1983		손실통제	손실빈도, 손실정도	실증
Sandra M. Huszagh & Mark R. Greene	1985		수출보험	수출성과	실증
Small	1986		관리방법	손실감소	실증
Garl h. Christensen	1987		관리수단	수출성과	실증
Malott	1988		재무기법	효율성	실증
조동세	1988		손실통제	기대수익, 자본비용, 기업가치	실증

Mark, Davidson and Thornton	1989	소송		기업가치(주가변동)	실증
Joan T. Schmit and Kendal Roth	1990	리스크 수준, 규모, 산업특성		비용성과	실증
James	1990	규모, 경험		인식도, 관리성과	실증
이경룡	1990		리스크통제	기업성과	문헌
구종순	1990	규모, 경험		결제방식, 인식도	실증
Cassidy, Constand, Corbett	1990		리스크관리활동	기업가치(주가변동)	사건
Herbstman	1990		통제(직원교육)	손실감소	실증
Bridger	1990		분산, 손실통제	기업이익	사례
Herbig and Golden	1994	규모		관리비용	실증
김용호	1994	규모, 경험, 거래특성,	통제, 재무, 인식도	비용성과(객관적), 수출성과	실증
이종화	1995		리스크관리	성과(수익)	실증
권오성	1997	규모, 경험, 산업, 지역,	통제, 재무, 인식도	관리성과(만족도) 비용성과(주관적)	실증
Neil A. Doherty	2000	이익변동성, 재무리스크		기업가치(주가변동)	문헌
이제현	2001	거래기간, 리스크정보,	보험인지도, 부보여부	수출보험 활용율, 성장률, 매출액	실증

자료 : 연구자 작성.

리스크 관리기법과 관련하여 조동세(1983)는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손실통제와 관리성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화 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의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고, Small(1986)은 리스크 손실에 사전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근방법임을 제시하였다. Huszagh and Greene(1985)은 수출보험활용이 수출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조동세(1988)는 손실통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초기의 통제비용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보다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수단임을 규명하였다.

Bridger(1990)도 Canada Packers 회사를 사례로 들면서 회피로부터 시작하여 분산, 손실통제 등의 체계적인 리스크 통제활동은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일반적인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켜 기업목적인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Herbstman(1990)도 생산물배상책임 손실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클레임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손실통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고객의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Cassidy, Constants and Corbett(1990)는 리스크 관리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이 기

업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중화(1995)는 건설기업의 리스크 통제 활동과 기업수익률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Neil A. Doherty(2000)은 회사의 대표가 오너인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지 여부에 따라 리스크관리 성과와 기업운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전문경영인의 경우 리스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본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율이 비선형이면, 이익의 변동성이 낮은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기업가치가 높아지며, 주주, 채권단, 고객,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재무리스크(financial distress)의 크기가 크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하였다.<sup>2)</sup>

## 2.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관세분야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는 크게 관세행정의 리스크관리와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들의 리스크관리로 나누어진다.

### 1) 관세행정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관세행정과 관련한 위험은 무역과 산업 또는 일반국민에게 재산적 손실이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법규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정도라고 정의<sup>3)</sup>한다.

관세행정의 위험관리는 관세행정의 대상인 무역물품과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과정에서 위법가능성이 라는 위험을 측정하여 대응함으로써 한정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행정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sup>4)</sup>이다. 따라서 관세행정상의 위험관리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위험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통제기법이 요구된다.

교토협약<sup>5)</sup>에서 요구하는 위험관리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세관의 통제는 위험관리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둘째로 관세당국은 검사 대상자나 운송수단을 포함한 검사대상물품과 검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분석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고(김중근 2003)<sup>6)</sup>, 셋째로 관세당국은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준수이행도를 측정하는 전략을 채택<sup>7)</sup>하도록 하고 있다.

2) Neil A. Doherty, Integrated Risk Management, pp.193-230, "Agency Costs and Dysfunctional Investment" Underinvestment and Asset Substitution, Tax Effects-Risk reduction and Convex Tax Schedules, Risk Management and the Cost of Financial Distress.

3) U.S. Customs Service, Trade Compliance Measurement Report & Trade Compliance Risk Management Process, 1999, p.4. ; WCO, Protocol of Amend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Guideline.

4) 관세청, 관세행정 위험관리 이론, 협동문고, 2003, p.7.

5) 세계관세기구(WCO)는 1994년부터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으로 불리는 「통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에 관한 국제 협약」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1999년 6월 제93/94차 WCO 총회에서 교토협약 개정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6) 통관절차에 있어 현대적인 국제표준규정, 자동화체제의 활용, 도착전 정보의 이용, 전자자금이체의 활용, 세관요건의 투명성 제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선별적 기준에 기초한 위험관리분석(Risk Management Analysis) 기법의 활용 등 현대화된 요소가 추가되었다.

관세신고납부제도의 위험관리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제도형성 단계에서는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사전에 반영되도록 하며, 제도운영단계에서 위험관리는 납세자의 자율적인 협조와 전문가인 관세사의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지원과 세관공무원의 신고납부에 관한 범규의 엄격한 집행과 오류의 사전확인을 통하여 제도운영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도평가 및 개선단계는 신고납부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각 제도의 운영결과인 사전예방효과, 오류시정효과, 사후확인효과, 사후처벌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김광수 2006)

<표 2-2> 관세행정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학자	연도	내용	연구단계	제도형성	운영처리	결과평가	방법
김영춘	1997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실태	전체처리단계	제도형성	운영실태	사후구제	실증
김기영	1999	선진국 관세청의 위험관리 현황과 추진방안	전체처리단계	제도형성	운영실태		문헌
강홍중	2000	관세행정상의 위험관리	전체처리단계		운영실태		문헌
강홍중	2001	관세행정상의 납세의무자관리	사전예방단계			사후구제	문헌
류수현	2001	관세행정에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사전예방단계		운영관행	사후구제	문헌
나성길	2002	신고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와 입증책임	사후확인단계			오류확인	문헌
김영춘	2003	관세행정 위험관리 고도화	전체처리단계	제도형성	운영현황		문헌
김재식	2003	기업의 통관 리스크 완화	사후확인단계			사후구제	문헌
김중근	2003	교토협약 개정의정서의 신고인 책임과 권리	오류시정단계			사후구제	문헌
나성길	2003	납세자 권리보장관련 관세법령 입법동향	사전예방단계	법규마련		사후구제	문헌
정재완	2003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사후확인단계	제도개선	운영현황	사후구제	문헌
김용태	2004	관세형법 밀수입죄와 몰수	사후처벌단계			사후처벌	문헌
김중근	2004	관세법상 가산세제도의 개선	사후처벌단계	제도개선		사후처벌	문헌
정재완	2004	세관 무역업체간 분쟁과 관세사의 대응	사후확인단계		위험회피	사후구제 사후처벌	문헌
성윤갑	2005	원산지표시제도	전체처리단계	제도형성	운영실태	사후처벌	실증
류수현	2005	신고납부관세의 불복	사후확인단계			사후구제	문헌

7) WCO, Protocol of Amend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Standard 6.3, 6.4, 6.5

송선욱	2005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한 미국 관세사 법규준수 관리	전체처리단계		운영기법		문헌
한상현	2005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용	사후확인단계		제도운용	사후구제	문헌
이대복	2005	국제무역 증진과 세관행정	전체처리단계		세관역할		문헌
김광수	2006	관세신고납부제도의 위험요인	전체처리단계	제도형성	제도운영	평가, 성과	실증

\* 자료 : 김광수(2006) 논문자료 인용 및 재구성

## 2)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들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관세행정의 수요자인 수출입기업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김재식(2003)은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 통관리스크를 시간적리스크와 금전적리스크로 구분한 후, 리스크 완화방안을 예측가능성 증대와 오류수정기회 확대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김태인(2005)은 서울세관 관내 관세사 80명을 대상으로 한 ‘관세사무소 운영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과 관세사배상책임보험, 벤치마킹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실증분석내용으로는 첫째, 관세사무소 특성(규모, 경험)은 운영리스크 관리비용에 종합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운영리스크 관리수단(리스크통제, 리스크재무) 중 리스크 통제는 운영리스크 관리비용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셋째, 리스크 인식도는 운영리스크 관리비용에 개별 요인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영향을 미치나, 종합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관세사무소 운영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운영리스크 관리비용은 관세사무소들의 운영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훈, 김태인(2006)은 ‘관세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의 5가지 유형별 배상사례를 제시하여,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리스크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태인(2006)은 10개 산업분야의 400개 중소기업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최종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관세업무리스크 인식수준은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관세업무에서 리스크통제기법의 활용은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관세업무에서 리스크관리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운영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세업무의 운영리스크관리는 기업가치의 상승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리스크 인식의 제고를 통한 리스크통제위주의 관리기법의 활용 및 리스크관리 비용의 절감을 통한 리스크관리 성과의 향상, 그리고 기업운영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운영리스크 관리-관리성과-기업성과” 모형이 관세업무리스크 관리에도 유의한 것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수출입기업들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세업무 분야에서 노력해야 하는 핵심사항과 이들 기업들이 운영리스크와 법적리스크 관리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내부관리시스템 구비 방안에 대하여도 제안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업무매뉴얼과 윤리현장을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실천을 홍보/교육하고, 업종별/수준별 윤리경영 매트릭스를 활용하며, 리스크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하여 리스크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세업무 운영리스크 관리(customs risk management)를 실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리스크 회피, 전가, 손실통제 등의 리스크관리기법들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업무리스크에 대한 높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영자나 담당부서의 높은 리스크 인식을 바탕으로 이후 리스크 전가나 손실통제위주의 관세업무 내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 3.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 사례연구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사고 사례에 관한 연구는 정성훈, 김태인(2006)의 ‘관세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관세업무리스크 관리’가 유일하다.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의 전담보험사인 'IMI Korea'의 이주열(2003)의 ‘관세사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한국관세사회의 2003년도 관세사지 신년호에 게재한 적이 있으나,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의 도입 및 소개에 그쳤다.

정성훈, 김태인(2006)의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고유형별로 정리한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사례들은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전담보험사인 IMA Korea(주)<sup>8)</sup>에 접수 처리된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47건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보험사는 사고유형을 ‘세번적용 오류’, ‘착오신고’, ‘신고 누락 및 고지누락’, ‘기간경과’ 및 기타 ‘물품파손’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관세사들의 연평균 총 사고금액은 199,527,711원 이었으며, 1건당 평균 사고금액은 12,215,982원이었다.

〈표 2-4〉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지급현황

년 도	사고금액	공제금액	지급보험금	진행중	청구포기/면책
2004년	17건	17건	10건	1건	6건
	293,207,366원	61,000,000원	104,749,020원	30,000,000원	38,362,346원
2005년	21건	21건	14건	1건	6건
	230,383,779원	67,000,000원	96,050,151원	19,636,815원	30,382,143원

8)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은 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관세사법시행령 제22조(손해배상책임보험)제1항 제1호의 내용이 "보증보험에의 가입"에서 "보험에의 가입"으로 개정(2001. 3. 31)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관세사회에서 아이엠아이코리아손해보험증권에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였다.



2006년 7월	10건	10건	6건	2건	2건
	65,991,990원	14,000,000원	23,622,180원	19,000,000원	1,875,740원
합 계	49건	48건	30건	4건	14건
	598,583,135원	142,000,000원	224,421,351원	68,636,815원	70,620,229원
평 균	16.3건	16건	10건	1.3건	4.7건
	199,527,711원	47,333,333원	74,807,117원	22,878,938원	23,540,076원

위 연구에서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변호사, 약사 등의 경우에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설명과 아울러, 관세사의 경우도 구상권이 행사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관세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의 장점은 보험사의 보험금 보상 처리 후 피보험자(관세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경제안정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관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세사·위탁자·보험회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금이 배상되고,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활용하여 소송대행이 이루어지므로 관세사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인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별 리스크인식 정도와 실제 보험사고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관세사들이 집중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를 실제로 밝혀내는데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관세사들의 업무분야별 리스크 인식도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관세업무에 대한 리스크인식과 리스크관리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문헌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둘째, 관세업무 분야별 리스크인식정도에 대하여 수출입기업과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내용을 상호분석한 후 셋째, 실제 관세사들이 관세업무 수행하면서 발생하였던 리스크들을 관세사 배상책임보험 접수사례들을 근거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위 자료들을 근거로 제4장에서는 관세사들의 관세업무 분야별 리스크 인식정도와 실제 관세업무 분야별 리스크 발생사고와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SPSS v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문헌연구

Herbstman(1990)은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사례연구 결과 손실의 빈도와 손실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손실통제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편 James(1990)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국제화경험이 많을수록 리스크의 인식수준이 높아지며 이러한 기업들은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수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리스크 관리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인식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관리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경룡(1990)의 한국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 조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의 리스크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191개 기업 중 최고경영자의 89.5%가 리스크 인식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8.9%(17개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이 특히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김용호(1994)는 리스크 관리특성(인식도, 관리수단)은 신용리스크 관리성과(비용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고, 권오성(1997)도 제조물배상책임 인식특성(PL 환경인식, 제품결함인식, 리스크관리 인식)이 리스크 관리성과(비용성과)에 매우 높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제현(2001)은 기업특성 중 수출보험인지도가 수출보험 활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김태인(2005)은 관세사무소들의 리스크 인식도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관세사무소 운영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 3-1〉 리스크 인식과 관리성과 선행연구

학 자	연도	기업특성 변수	관리성과 변수	분석
Simpson	1974	인식도	수출성과	실증
James	1990	인식도	관리성과	실증
Herbstman	1990	인식도	비용성과	사례
김용호	1994	인식도	비용성과(객관적), 수출성과	실증
권오성	1997	인식도	비용성과(주관적)	실증
이제현	2001	수출보험 인지도	보험활용율	실증
김태인	2005	인식도	비용성과, 운영성과	실증

자료 : 연구자 작성.

## 2. 실증연구

### 1) 제1차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 조사

현직 관세사들이 실제 관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느끼는 위험의 크기와 원인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2003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지역 30개의 관세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설문조사서는 관세사법 제 2조의 관세사 업무를 총 19개로 세분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느끼는 위험의 크기를 5단계로 나누어 체크하도록 하고, 위험의 원인 및 관리형태를 함께 체크하도록 질문하였다. 당시 관세사업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어 있지 않고 관리방안이 제시된 바가 없는 관계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위주로 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그러한 방법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유도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업무 분야별 리스크 인식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 전문가(관세사)의 관세사업무의 리스크인식도 (2003년)

관세사법 제2조의 관세업무 분야	리스크 인식크기(%)					평균
	1	2	3	4	5	
각종통관제도 및 HS품목별(부.류별) 세부상담	0	12	38	31	19	3.57
창구일원화 및 요건확인 절차상담	3.5	31	31	34.5	0	2.96
보세구역 관련 신고 및 업무절차	6	15.5	66	12.5	0	2.85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입신고 등 절차	6	31	44	19	0	2.76
수출입 및 반출입 신고	0	12	38	31	19	3.57
관세감면, 원산지표시, 상표신고	0	12	38	31	19	3.57
세관장확인사항에 의한 요건확인 절차	0	0	62	19	19	3.57
HS세번 및 관세율결정	0	0	18	44	38	4.2
과세가격의 평가(가산요소 및 감산요소)	0	0	18	44	38	4.2
환급 신청 및 소요량계산서 작성 및 구비	6	15.5	53	22	3	2.99
분할증명서 및 기납증 발급업무	0	19	56	25	0	3.06
관세조사 및 심사에 대응 및 의견진술	0	12	44	25	19	3.51
지적재산권분야 및 기업자율심사분야 대응	0	6	69	6	19	3.38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 불복청구(쟁송)	0	0	56	25	19	3.63

위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관세사법 제2조의 1호 업무(품목분류 및 평가)가 가장 리스크 인식정도가 높은 업무로 나타났다는 점과 2호 업무(수출입 신고)와 4호 업무(상담업무), 6호 업무(조사분야의 조

력제공) 및 3호 업무(행정심판)도 리스크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품목분류 및 평가 업무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이고, 수출입 신고업무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리스크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사분야의 조력제공업무와 행정심판업무는 빈도수가 많지 않고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업무는 모든 관세업무분야의 기초분야이고, 모든 관세업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느끼는 리스크 인식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세업무 리스크의 원인으로 설문지에 기재한 답변내용에는 법 해석의 오류, 세관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 전산직원의 입력오류, 화주의 불확실한 정보제공, 업무관행의 착오, 제세 대납금 미회수, 세관의 과세전 통지 및 경정(추징), 화주의 고의적인 부정환급, 내륙운송 중 도난 및 파손, 창고 반출입 지연으로 인한 책임전가, 검역물품에 대한 위험, 미숙련분야에 대한 정보숙지 부족, 상담시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 감면대상여부 미확인, 세번오류로 인한 세관의 경정(추징) 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답변으로는 화주가 고의적으로 제공한 불확실한 정보, 고의적인 부정환급, 내륙운송 중 도난 및 파손 등이 있었다.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기술된 내용에는 대부분 관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직원교육 및 실력배양 등이 있었다. 행동지침 마련 등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무소는 거의 없었으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현재 윤리경영을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업무추진 금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최우선, 의뢰인의 기밀 정보 유출 금지 등이 있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 내부적으로 행동지침을 마련해 놓고 윤리경영의 내용을 일부 실천하고 있는 사무소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2) 제2차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 조사

관세업무 분야별 리스크 인식도 조사를 위하여 2006년 7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와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입기업의 경우, 중소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접촉을 위하여 직접방문비율 20%, 무역협회에 정식 등록된 8개 업종의 2,458개 무역업체 e-mail 리스트 20%,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1000대 기업의 팩스번호 리스트 20%,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한 2,758개 업체 e-mail 리스트 20%, 무역전문구인구직 사이트(<http://www.tradein.co.kr>) 회원사 20% 비율로 4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00개 업체에게 직접방문, 설문 e-mail, 설문 팩스전송 후 설문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설문에 응답한 업체의 설문지 총 156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역업무 개시년도가 3년이 안되었거나 응답누락 항목이 많아 설문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51부가 유효하였다. 최종적인 유효설문지 회수율은 37.7%였다.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출

입업체는 수출입신고, 관세감면/원산지표시/상표권신고, 과세가격평가, HS세번 및 관세율결정 업무의 순서로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아래 <표 3-3>에 나타났다.

<표 3-3> 수출입기업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	리스크 인식크기(%)					평균
	1	2	3	4	5	
각종통관제도 및 HS품목별(부.류별) 세부분의	0.0	22.5	47.0	30.5	0.0	3.08
창구일원화 및 요건확인 절차문의	0.7	22.5	61.6	15.2	0.0	2.91
보세구역 관련 신고 및 업무절차	7.9	42.4	34.4	14.6	0.7	2.58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입신고 등 절차	11.9	42.4	37.7	7.9	0.0	2.42
수출입 및 반출입 신고	0.0	6.0	22.5	58.9	12.6	3.78
관세감면, 원산지표시, 상표신고	0.0	4.0	25.8	60.9	9.3	3.75
세관장확인사항에 의한 요건확인 절차	.7	25.2	45.7	28.5	0.0	3.02
HS세번 및 관세율결정	1.3	16.6	37.7	34.4	9.9	3.35
과세가격의 평가(가산요소 및 감산요소)	0.0	4.0	34.4	61.6	0.0	3.58
환급 신청 및 소요량계산서 작성 및 구비	0.0	17.2	34.4	46.4	2.0	3.33
분할증명서 및 기납증 발급업무	0.0	32.5	44.4	17.2	6.0	2.97
관세조사 및 심사에 대응 및 의견진술	0.0	29.1	51.7	12.6	6.6	2.97
지적재산권분야 및 기업자율심사분야 대응	1.3	32.5	54.3	11.9	0.0	2.77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 불복청구(쟁송)	5.3	33.8	41.7	13.9	5.3	2.80

수출입신고 업무는 관세업무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업무분야이고, 과세가격 평가업무는 관세업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리스크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원산지표시와 상표권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던 분야였으나, 최근 WTO 원산지협약을 강하게 적용시키고 2006년 4월부터 중국 임가공무역에 대한 원산지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부터 중국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원산지표시기준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영향이 업계에 반영되어 2번째로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분야가 되었다.

또한 세관조사 및 심사에 대응업무와 행정심판업무는 수출입기업에게는 경험이 부족한 분야이므로 리스크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세관의 조사 및 심사, 행정쟁송 업무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였거나 발생하여도 직접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낮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업무 전문가 집단인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세관 관내의 130개 수출입 기업의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총 130매를 배포하여 2006년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방문 및 Fax를 통해 85매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85매 중 유효한 설문지 80매를 최종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명의 서울지역 관세사들의 사무소 운영형태는 개인사무소 17개, 합동사무소 24개, 관세사법인 39개소로서 관세사법인이 가장 많았다. 관세사들의 업무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소 개업년수는 2년(6명), 3년(3명), 4년(22명), 5년(23명), 6년(6명), 7년(3년), 8년(8명), 9년(9명)으로서 4년 ~ 5년 경력관세사가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다.

사무소의 규모를 나타내는 사무소별 관세업무 종사자 수는 3명(6개), 4명(3개), 5명(11개), 6명(5개), 7명(20개), 8명(12개), 20명(9개), 33명(9개), 40명(5개)으로서 7명 ~ 8명 규모의 관세사무소가 전체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 집단인 관세사들의 경우는 과세가격 평가, 각종 상담업무, 기업자율심사, 행정쟁송, 원산지표시 및 상표권신고 업무의 순서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아래 <표 3-3>에 나타났다.

<표 3-4> 전문가(관세사)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	리스크 인식크기(%)					평균
	1	2	3	4	5	
각종통관제도 및 HS품목별(부.류별) 세부상담	0.0	2.5	25.0	32.5	40.0	4.10
창구일원화 및 요건확인 절차상담	12.5	7.5	35.0	40.0	5.0	3.18
보세구역 관련 신고 및 업무절차	5.0	45.0	32.5	17.5	0.0	2.63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입신고 등 절차	7.5	45.0	42.5	5.0	0.0	2.50
수출입 및 반출입 신고	0.0	32.5	17.5	20.0	30.0	3.48
관세감면, 원산지표시, 상표신고	0.0	20.0	15.0	15.0	50.0	3.95
세관장확인사항에 의한 요건확인 절차	0.0	20.0	27.5	27.5	25.0	3.58
HS세번 및 관세율결정	0.0	12.5	20.0	30.0	37.5	3.93
과세가격의 평가(가산요소 및 감산요소)	0.0	12.5	7.5	17.5	62.5	4.30
환급 신청 및 소요량계산서 작성 및 구비	5.0	25.0	20.0	27.5	22.5	3.38
분할증명서 및 기납증 발급업무	7.5	17.5	30.0	35.0	10.0	3.23
관세조사 및 심사에 대응 및 의견진술	0.0	2.5	20.0	60.0	17.5	3.93
지적재산권분야 및 기업자율심사분야 대응	0.0	2.5	22.5	42.5	32.5	4.05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 불복청구(쟁송)	2.5	2.5	25.0	35.0	35.0	3.98

과세가격 평가업무는 관세업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이고, 상담업무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기업자율심사와 행정쟁송업무는 관세법과 WTO신평가 협약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깊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전통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수출입업체와 동일하게 전문가집단 역시 원산지표시와 상표권업무에 대하여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원산지문제가 업계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 까지 미치고 있었다.

수출입기업과 전문가(관세사) 집단의 관세업무에 대한 리스크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출입기업과 전문가(관세사) 그룹의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T-test를 실시하게 되므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등분산 가정에 대한 문제여부를 확인하였다.

T-test 결과,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44.906 이고 유의확률(Sig) p= 0.000 < 0.05 이므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t 값은 -6.074, 유의확률(Sig) p= 0.000 < 0.05 이므로 수출입업체와 전문가 간에 인식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출입업체와 전문가들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를 비교한 [그림 3-1]은 2가지 특이점이 있다.

첫째, 전문가의 관세업무리스크 인식도가 수출입기업의 담당자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수출입 물동량의 약 94%(전체통관건수)를 관세사들이 위임받아 관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관세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는 관세사들이며, 수출입업체 무역업무 담당자들은 거래 관세사들에게 업무진행 상황을 전달 및 사후보고 받고 있다.9) 따라서 수출입신고 업무를 제외하고는 실제 관세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들이 관세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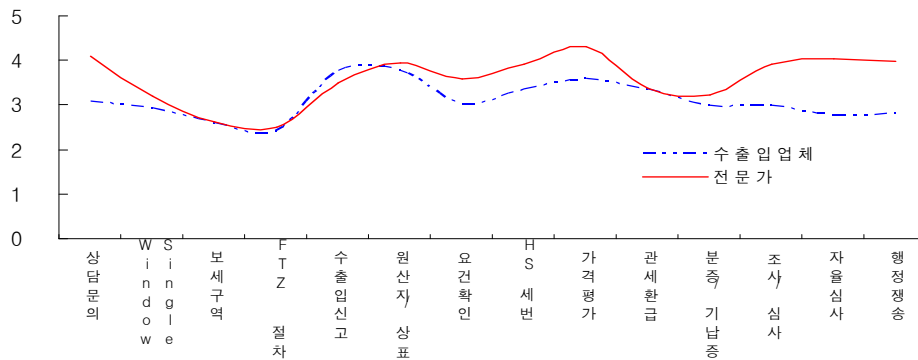
<표 3-5> 리스크 인식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리스크 환경요인	가 설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인식도	H1-2	전문가집단	80	3.5839	.6648	7.433E-02		
		수출입업체	151	3.0932	.3890	3.165E-02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리스크 환경요인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95% 신뢰구간	
인식도	44.951	.000	-7.075	229	.000	-.4907	하한	상한
			-6.074	108.375	.000**	-.4907	-.6274	-.3541
							-.6509	-.3306

유의수준: \* p < 0.1, \*\* p < 0.05

9)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은 관세업무를 관세사에게 위임시키고 있으며, 전체 수출입 통관건수 및 통관금액대비 관세사 위임 건수는 전체 94%이며, 관세사 위임 금액은 82%이다. “관세사업계의 향후전망 및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0. 10. p.20.

둘째, 전문가들의 인식도와 수출입업체의 인식도는 수출입신고와 과세가격평가분야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상담분야와 조사/심사/행정쟁송 분야에서는 리스크 패턴과 기복이 상이하다. 실제 관세업무현장에서 수행하는 관세사들은 7가지 관세업무에 대한 각각의 리스크의 크기를 수출입업체 담당자들보다 더욱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어떤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낮은지 그 인식이 뚜렷하다. 이에 비해 수출입업체는 7가지 관세업무 모두에 대해 난이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인식수준 역시 통관업무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3-1] 업체와 전문가의 관세업무 영역별 인식도

따라서 결론적으로 관세업무 리스크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수출입기업의 인식도와 전문가의 인식도는 차이가 있으며, 전문가의 업무 분야별 인식도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3. 사례연구

#### 1) 제1차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접수 사례조사

현재 관세사의 단체 배상책임보험<sup>10)</sup> 가입을 관리하고 있는 IMI KOREA 손해보험중개인(주)의 자료를 토대로 2002년 및 2003년 10월까지의 관세사 배상책임보험 사고유형 및 지급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은 관세사법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관세사법시행령 제22조(손해배상책임보험)제1항 제1호의 내용이 "보증보험에의 가입"에서 "보험에의 가입"으로 개정(2001. 3. 31)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관세사회에서 아이엠아이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에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였다.



〈표 3-6〉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사고유형 및 지급현황

년 도	사고유형	사고발생 금액	보험지급액	미지급사유
2002년도	수입신고 오류(7건)	15,784,220원	6,806,400원	면책/공제금액
	세번오류 (2건)	9,047,230원	0원	면책/청구포기
	기간경과 사고(2건)	12,335,626원	10,335,626원	공제금액
	환급액 누락(1건)	35,698,050원	32,698,050원	공제금액
	세금운용 사고(1건)	17,867,860원	16,867,860원	공제금액
	내륙운송 사고(2건)	0원	0원	부보범위 면책
	상당 사고(1건)	10,000,000원	0원	면책(소급보험)
	총 16건	100,732,986원	66,707,936원	
2003년도 (10월까지)	수입신고 오류(5건)	91,079,140원	17,380,300원	면책/공제/진행중
	세번/세율오류(9건)	126,414,750원	3,831,480원	면책/공제/진행중
	기간경과 사고(2건)	54,511,500원	20,000,000원	면책/공제
	총 16건	272,005,390원	41,211,780원	

위 표<3-6>에서 수입신고 오류에는 감면세 미적용, 원산지 미표시, 징수형태 입력오류, 금액 및 감면 부호·결제통화 입력오류 등이 있으며, 기간경과 사고는 재수출 기간경과 및 제세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청구와 가산금 청구를 포함한다. 환급액 누락의 경우는 개별환급 신청시 특소세를 누락시킨 채로 환급을 진행한 경우이며, 세금운용 사고는 입금된 관세 등 제세를 납부기한이 다른 수입신고 건에 납부하여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였다. 내륙운송사고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내륙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멸실된 경우이고, 상당 사고는 식품검역관련 상당을 잘못하여 화주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였다.

2002년의 경우에 총 사고발생금액 100,732,986원의 66.23%인 66,707,936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경우를 보면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배상책임에 실효가 있으며 관세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3년의 경우는 사고발생금액이 전년대비 270%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지급액은 전년의 61%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사당시에도 진행 중인 접수 건이 있기 때문이었다.

위 표<3-6>의 미지급사유에서 면책은 보험가입기간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면책과 배상책임보험의 부보범위를 벗어난 면책으로 구분된다. 공제금액은 보험가입시 적용된 보상한도에 따른 공제금액을 의미한다.

2) 제2차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접수 사례조사

IMI KOREA 손해보험증개인(주)의 자료를 토대로 2004년 및 2006년 7월까지의 관세사 배상책임보험 사고유형 및 지급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7>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사고유형 및 지급현황

년 도	사고유형	사고발생 금액	보험지급액	미지급사유
2004년도	세번오류 (5건)	44,366,650	22,548,230	면책/공제/진행중
	착오신고 (6건)	117,114,666	57,049,400	면책/공제/진행중
	신고누락 (1건)	8,800,000	5,800,000	면책/공제/진행중
	고지누락 (2건)	17,626,050	9,351,390	면책/공제/진행중
	기간경과 (3건)	105,300,000	10,000,000	면책/공제/진행중
	총 17건	293,207,366원	104,749,020원	
2005년도	세번오류 (6건)	53,536,340	10,779,190	면책/공제/진행중
	착오신고 (7건)	72,190,649	34,184,516	면책/공제/진행중
	고지누락 (2건)	4,345,870	1,172,935	면책/공제/진행중
	신고누락 (1건)	3,340,470	2,340,470	면책/공제/진행중
	기간경과 (3건)	63,573,060	38,941,440	면책/공제/진행중
	화물파손 (2건)	30,000,000	0	면책/공제/진행중
	총 21건	230,383,779원	96,050,151원	
2006년도 (7월까지)	착오신고 (5건)	16,809,550	15,379,520	면책/공제/진행중
	신고누락 (2건)	5,240,080	4,240,080	면책/공제/진행중
	기간경과 (3건)	43,942,360	4,002,580	면책/공제/진행중
	총 10건	65,991,990원	23,622,180원	

위 <표3-7>에서 연도별 사고유형별 세부내용은 아래 <표3-8>과 같다.

<표 3-8>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사고유형별 세부내용

연도	사고유형	사고 내용
2004년	세번 오류	세번적용오류로 인한 납입관세 청구
		세번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청구

	착오 신고	양허추천 관세 착오신고
		수출신고상의 거래구분 착오신고
		관세,부가세 면제물품 착오신고
		수입신고서 란별 배분 착오하여 신고
		할당관세 해당물품 착오 신고
		수입통관자금 착오 납부
	고지 누락	수입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미제출 가산세 청구
		부가세면세분 수입계산서 누락인한 가산세청구
	기간 경과	수입식품 통관대행 착오(유통기한 경과)
특별소비세 환급 기간 도과		
2005년	세번 오류	수입물품 세번적용오류로 과다환급
		세번적용 오류에 따른 가산세 청구
	착오 신고	관세 감면 착오신고
		개별환급대상 누락하여 관세 환급신고
	고지 누락	관세 납부기한 지연통보인한 가산금 청구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통지 지연
	신고 누락	수출신고필증 누락하여 환급신청
	기한 경과	관세환급금 환급기간 도과
		재수출 조건부 면세통관상의 기한 경과
관세 등 납부고지서 발송 지연으로 납기 도과		
화물 파손	수입물품 통관검사시 물품파손	
2006년	착오 신고	수입물품 관세적용 및 상담착오
		해외 임가공물품 임가공비 중복과세신고
		관련서류 미확인으로 관세율 적용착오
		재수입 면세신청 착오누락으로 관세추징
		용도세율적용신청서 미제출로 할당관세적용 부인
	신고 누락	수입신고서 작성시 운송료 누락
	기간 경과	관세납부기한 착오안내
재수출 조건부 면세통관상의 기한 경과		

## IV. 연구결과

### 1. 관세업무 리스크 인식도 변화

2003년도 관세사 그룹의 리스크 인식도와 2006년도 관세사 그룹의 리스크 인식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2003년도 조사에 참여한 관세사 그룹과 2006년도 조사에 참여한 관세사 그룹의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T-test를 실시하게 되므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등분산 가정에 대한 문제여부를 확인하였다.

T-test 결과, 두 집단 모분산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F값이 2.446 이고 유의확률(Sig)  $p = 1.21 > 0.05$  이므로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검증결과를 해석하였다.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t값은 0.633, 유의확률(Sig)  $p = 0.528 > 0.05$  이므로 2003년 관세사그룹과 2006년 관세사그룹간의 인식도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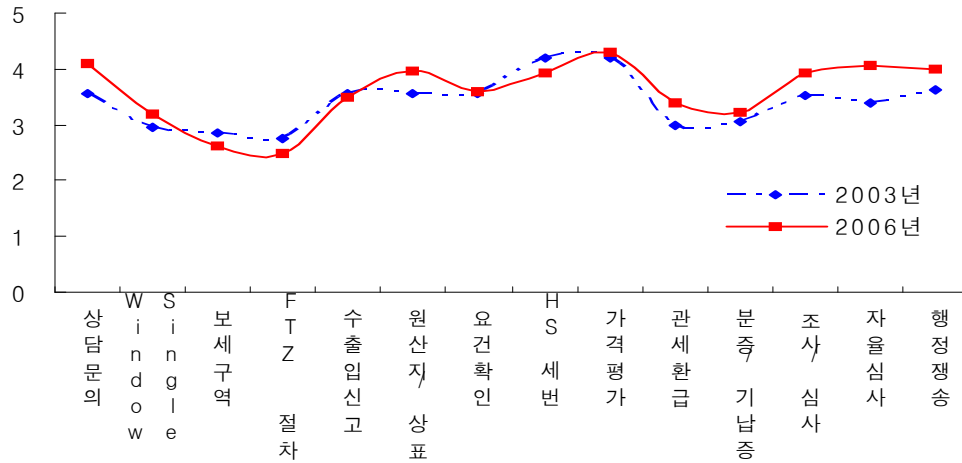
〈표 3-9〉 리스크 인식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리스크 환경요인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인식도		2003년 관세사그룹	30	3.4970	.5513	.1006			
		2006년 관세사그룹	80	3.5832	.6646	7.430E-02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리스크 환경요인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인식도	등분산 가정	2.446	.121	.633	108	.528	8.625E-02	-.1837	.3562
	등분산 불가정			.689	62.419	.493	8.625E-02	-.1638	.3363

유의수준: \*  $p < 0.1$ , \*\*  $p < 0.05$

2003년도 관세사 그룹의 리스크 인식도와 2006년도 관세사 그룹의 리스크 인식도를 비교한 [그림 3-1]에서도 독립표본 T-test 결과처럼 두 그룹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다만, 상담분야와 FTZ절차, 원산지표시 및 상표권분야, 관세환급, 조사 및 심사, 자율심사, 행정소송분야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2006년도 인식도가 평균 0.172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관세행정의 원산지

및 상표권, 조사 및 심사분야의 업무강화가 해당업무와 상담분야, 자율심사, 행정소송분야의 관세사들의 리스크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관세사의 리스크인식도 변화

## 2. 리스크 인식도와 리스크 발생의 관계

리스크 인식도와 리스크 발생과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세업무분야별 2003년과 2006년의 관세사 그룹의 인식도와 관세사배상책임보험의 사고발생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통계기법으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나타내주는 지수이다.

2003년도 인식도와 2006년도 인식도의 상관계수는 0.835 으로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두 그룹의 리스크 인식도에 차이가 없다는 T-test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3-10> 요인별 상관관계분석 결과

		리스크 발생사고	2006년 인식도	2003년 인식도
리스크 발생사고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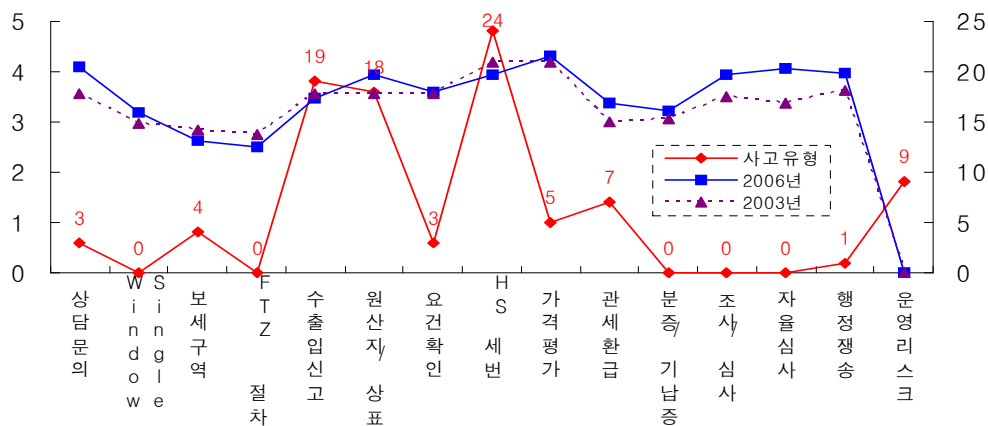
2006년 인식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221 (.448)	1.000 .	.000
2003년 인식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509 (.063)	.835** (.000)	1.000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그러나 2003년 인식도와 2006년 인식도는 리스크 발생과 모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관세 업무분야에 있어서 관세사들의 리스크 인식도와 실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리스크의 발생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3년도 관세사 그룹의 리스크 인식도와 2006년도 관세사 그룹의 리스크 인식도, 2002년에서 2006년 7월까지 관세사배상책임보험 사고발생 수를 비교한 [그림 3-2]에서도 상관관계분석 결과처럼 인식도와 보험사고 간에는 관련이 없었다. 특히 인식도가 높았던 상담분야와 조사 및 심사, 자율심사, 행정소송분야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수출입신고분야와 원산지/상표권분야, HS세번 및 관세율 적용분야는 리스크 인식도가 높은 만큼 사고발생비율도 매우 높았다.

본 연구결과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분야별 리스크 인식도와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업무분야는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사고발생이 높은 수출입신고, 원산지/상표권, HS세번 및 관세율 적용, 관세환급, 가격평가분야의 리스크 인식을 더욱 제고시키고, 중점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금계산서 누락, 세금운용실수, 서류 미전달, 고지서발송 지연 등 관세업무분야가 아닌 담당직원의 단순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리스크의 관리에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3-2] 관세사의 리스크인식도와 보험사고 발생건수 비교

## IV. 결 론

수출입기업이 외부전문가인 관세사에게 관세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업들은 관세사무소에 리스크를 전가하게 되고, 관세사무소는 수출입기업들의 관세업무리스크를 떠안게 됨에 따라 배상책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들 역시 운영리스크 및 법적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실제 관세업무 리스크 발생사고가 많은 업무분야에 집중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별 리스크인식 정도와 실제 보험사고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관세사들이 집중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를 실제로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관세사들의 리스크 인식도와 리스크 관리 업무분야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관세사들의 관세업무분야별 리스크 인식도와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업무분야는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사고발생이 높은 수출입신고, 원산지/상표권, HS세번 및 관세율 적용, 관세 환급, 가격평가분야의 리스크 인식을 더욱 제고시키고 직원교육과 실력향상을 통해, 중점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리스크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조사, 심사, 행정쟁송분야는 직원교육이나 전문관세사와 연계를 통해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세금계산서 누락, 세금운용실수, 고지서 불착, 고지서발송 지연 등 관세업무분야가 아닌 담당직원의 단순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리스크는 윤리경영과 직원내규 및 교육, 직원제도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관세사교육 및 관세사 사무원 교육, 관세사회의 홍보 등을 통해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리스크관리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관세청, 관세행정 위험관리 이론, 협동문고, 2003, p.7.
- 구종순,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p.32.
- 권오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광수, “한국 관세신고납부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박사논문, 2006, pp.27-32.

- 김중근, “교토협약 개정의정서의 신고인 책임과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4권 1호, 2003, p.2.
- 김영춘, “관세행정정보체제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10-15.
- 김용호, “한국기업의 수출신용리스크 관리와 성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22-37, p.89.
- 김태인, “관세사의 대형화를 통한 전문성확보를 위한 제언”, 한국관세사회, 관세사지 2003년 4월호, pp. 23-34.
- 김태인, “관세사무소의 운영리스크 관리와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4호, 2005, p.189.
- 이경룡, “한국기업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과제”, 위험관리학회지 제1권, 1990, p.67
- 이제현,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7-12, p.27, p.117.
- 이종화, “기업리스크 관리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주열, “관세사 전문 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한국관세사회, 관세사지 2003년 신년호.
- 정성훈, 김태인, “관세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관세사 업무 리스크 관리”, 수출보험학회지 제 권 호, 2006
- D'Arcy, Stephen P., “Enterprise risk management”,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2001, p.207.
- Bridger, J. A. Tony, "Effective Risk Management Through Loss Control", *Risk Management*, Nov, 1990, pp.24-28.
- Cassidy, Steven M., Richard L. Constand and Richard B. Corbett, "the Market Value of Corporate Risk Management Func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7, 1990.
- Christensen, Garl H., Angela da Rocha and Rosane Kerbel Gertner, "O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Exporting Success of Brazilian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87.
- Doherty, Neil A., *Intergrated Risk Management*, McGraw-Hill, 2000, pp.3-5.
- Huszagh Sandra M. and Mark R. Greene, "FCIA : Help or Hindrance to Export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49, 1982.
- Herbstman, Donald, "Controlling Losses The Burger King Way", *Risk Management*, March, 1991, pp.22-30.
- Lam, James,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and the Role of the Chief Risk Officer" *Erisk(Erisk.com)*, March 25, 2000.
- Lam, James, *Enterprise Risk Management*, WILEY, 2003.
- Malott, R. H., *Product Liability System Hamper Competitiveness*, Financier, 1988, pp.29-32.



- 
- Mark, Greene and Oscar N. Serbein, *Risk Management: Text & Cases*, Reston virgin, Reston Publishing Co., 1983, p.4, p.49.
- Prakash Shimpi, *Integrating Corporate Risk Management*, Texere LLC., 2001, p.4.
- Rugman, Alan M., "Risk Reduction by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Winter, 1976.
- Schmit, Joan T. and Kendall Roth, "Cost Effectiveness of Risk Management Practic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7, 1990.
- Smith, Michale L. and C. Arthur Williams Jr., "How the Corporate Risk Manager Contributes to Company Value", *Risk Management*, April, 1991.
- Small, Ben F., A Common Sense Approach to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Risk Management*, December, 1986, pp.18-24.
- Sprecher, C. Ronald and Mars A. Pertl, Large losses, Risk Management and Stock Pric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0, 1983, pp.107-117.
- U.S. Customs Service, *Trade Compliance Measurement Report & Trade Compliance Risk Management Process*, 1999, p.4.
- WCO, Protocol of Amend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Standard 6.3, 6.4, 6.5